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문 안내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는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청약 및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분양상담 전화(☎1533-1355),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3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082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3)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3.02.2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①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	공급
건경사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청약통장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 가유공자 불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또는 ⑥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 Ⅰ 1·2순위)	0	0	0	0	0	0
APT무순위 I 임의공급 I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0	0	X	Х	Х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해당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전배세원기단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전매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필요시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제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공급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또는 잔금 납부금액이 총 분양가의 10%미만일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전매를 목적으로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매수인은 총 공급금액의 10%이상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v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의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1 10 26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i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및「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10년의 범위 내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합니다.(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2020.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2021.02.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공급의 계약자 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특별공급	일반	공급		당첨자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점사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3.04.(월)	2024.03.05.(화)	2024.03.06.(수)	2024.03.12(화)	2024.03.16(토) ~ 2024.03.24(일)	2024.03.25(월) ~ 2024.03.27(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견본주택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 문의 : ☎1533-1355 ※ 자격확인서류 기타 사항은 당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수 있음	사 홈페이지 참고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11111(2024,02,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 지상 46층, 4개동 총 5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05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6세대 포함I

■ 입주예정일: 2028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주택관리	- FI	주택형	약식	주	택공급면적(n	n²)	기타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분		모델	(전용면적기준)		주거전용	주거공용		(지하주차장등)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5200A	84A	84.5200	31.4640	115.9840	58.3852	174.3692	14.0667	242	24	36	43	21	7	131	111	6
민영 주택	2024000082	02	084.0579B	84B	84.0579	30.9704	115.0283	58.0660	173.0943	13.9898	244	24	36	43	21	7	131	113	6
		03	084.0513C	84C	84.0513	30.7884	114.8397	58.0614	172.9011	13.9887	80	8	12	14	7	2	43	37	2
	합 계										566	56	84	100	49	16	305	261	14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84.5200A	084.0579B	084.0513C
약식표기	84A	84B	84C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충호별 구분 없이 주탟형별, 청약유형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공					공급금액		계약급] (5%)			중도금	t(60%)			잔금(35%)
주택형	약식	급	동별		세				1회	2회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이조니
(주거전용면 적기준)	표기	세 대 수	ㅎ글 (라인)	층구분	대 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계약후 30일 이내 납부	2024.10.05.	2025.04.05.	2025.12.05.	2026.08.05.	2027.02.05.	2027.09.05	입주시 (입주예정월 말일)
			101동 1호	4~10	14	377,550,000	461,450,000	839,000,000	10,000,000	31,95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83,900,000	293,650,000
084.5200A	84A	82	102동 4호	11~20	20	389,700,000	476,300,000	866,000,000	10,000,000	33,3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303,100,000

				22~30	18	397,350,000	485,650,000	883,000,000	10,000,000	34,15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88,300,000	309,050,000
				31~36	12	399,600,000	488,400,000	888,000,000	10,000,000	34,4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310,800,000
				37~최상층	18	401,400,000	490,600,000	892,000,000	10,000,000	34,6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312,200,000
				4~10	26	389,250,000	475,750,000	865,000,000	10,000,000	33,25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302,750,000
			103동1.3호	11~20	40	401,400,000	490,600,000	892,000,000	10,000,000	34,6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89,200,000	312,200,000
		160	103동1,3오 104동1,3호	22~30	36	409,500,000	500,500,000	910,000,000	10,000,000	35,5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91,000,000	318,500,000
				31~36	24	411,750,000	503,250,000	915,000,000	10,000,000	35,75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91,500,000	320,250,000
				37~최상층	34	414,000,000	506,000,000	920,000,000	10,000,000	36,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92,000,000	322,000,000
				4~10	14	382,050,000	466,950,000	849,000,000	10,000,000	32,45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97,150,000
			101동 2호	11~20	20	394,200,000	481,800,000	876,000,000	10,000,000	33,8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306,600,000
		82	101등 2호 102동 3호	22~30	18	402,300,000	491,700,000	894,000,000	10,000,000	34,7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312,900,000
				31~36	12	404,100,000	493,900,000	898,000,000	10,000,000	34,9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314,300,000
084.0579B	84B			37~최상층	18	406,350,000	496,650,000	903,000,000	10,000,000	35,15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316,050,000
004.03735	046			4~10	27	386,100,000	471,900,000	858,000,000	10,000,000	32,9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300,300,000
			101동 3호 102동 2호	11~20	40	398,250,000	486,750,000	885,000,000	10,000,000	34,25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88,500,000	309,750,000
		162	102등 2호 103동 2호	22~30	36	406,350,000	496,650,000	903,000,000	10,000,000	35,15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316,050,000
			104동 2호	31~36	24	408,600,000	499,400,000	908,000,000	10,000,000	35,4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317,800,000
				37~최상층	35	410,400,000	501,600,000	912,000,000	10,000,000	35,6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91,200,000	319,200,000
				4~10	14	382,050,000	466,950,000	849,000,000	10,000,000	32,45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84,900,000	297,150,000
			101동 4호	11~20	20	394,200,000	481,800,000	876,000,000	10,000,000	33,8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87,600,000	306,600,000
084.0513C	84C	80	101동 4호 102동 1호	22~30	18	402,300,000	491,700,000	894,000,000	10,000,000	34,7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89,400,000	312,900,000
			- - -	31~36	12	404,100,000	493,900,000	898,000,000	10,000,000	34,9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314,300,000
				37~최상층	16	406,350,000	496,650,000	903,000,000	10,000,000	35,15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316,050,000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충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 시 시행수탁사와 계약자가 절반씩 부담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П

[단위 : 세대]

7	^L 분 (주택형)		084.5200A	084.0579B	084.0513C	합계
	국가:	우공자	6	6	1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3	3	1	7
	10년이상징	기복무군인	5	5	1	1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약	업근로자	5	5	1	11
		울산광역시	3	3	2	8
	장애인	부산광역시	1	1	1	3
		경상남도	1	1	1	3
다자	녀가구 특별공급		36	36	12	84
신혼	부부 특별공급		43	43	14	100
	생애최초 특별공급				7	49
노부.	7	7	2	16		
	합 계		131	131	43	30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 (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1	내용							
1회 한정I 자격요건I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서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 역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I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됨	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 포함) 제한]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	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선 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호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점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구성원 요건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	· 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지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여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후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비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을 갖추어야 함.)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구 분	트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유의사항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 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동일단지(다른단지 포함)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인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5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 군인포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8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 [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고	
9.84.7	등매급	기준	점수	- ""
계	10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0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E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시나(T-3(3)	3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울산광역시) 에
해당 시·도 거주기간(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고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세대수의 18%범위) : 10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볰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 [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3	(해당 세대의)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전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_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ਰਜ਼ੁਜ਼ਲ		TE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기준소득,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509,453원~	7,622,057원~	8,040,493원~	8,701,640원~	9,362,787원~	10,023,934원~
소득	(12 1, 5519)	ביי ביי אבי אבי אבי	100/6447 ~ 120/60 [0]	7,811,342원	9,146,467원	9,648,590원	10,441,967원	11,235,343원	12,028,720원
기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7,622,057원~	8,040,493원~	8,701,640원~	9,362,787원~	10,023,934원~
구분	일반공급			9,113,233원	10,670,878원	11,256,689원	12,182,295원	13,107,900원	14,033,506원
	(상위소득, 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9,146,468원~	9,648,591원~	10,441,968원~	11,235,344원~	12,028,721원~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괘자산기준 충족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추	점제,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 로	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남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3억3.100만원		주틱	보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다 (건물+토지)	이하 이하	토지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부부로 청약하려는자의 자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세대수의 9%범위): 49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1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예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 + 어머니(직계존속) 등재 : 평형 상관없음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단독세대)만 등재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3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ठम्म ४	ТЕ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구분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초과 ~160%이하	8,462,289원 ~ 10,415,123원	9,908,674원 ~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1+11	소득기준 초과 I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추첨제 (30%)	(30%)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3070)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둘	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 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i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3억3.100만원		주틱	백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물+토지)	이하	토지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시	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으 우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I용되고 있는 경우 I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리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당,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 │ 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 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 및 세대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Ш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2023.02.2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전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약점안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기타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한 자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소병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가·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의 상대월, 위축기적 3개월 '유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입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에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자족에서 청약에금으로 전환 기준 : 최소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에금 지역간 예치금의 고적 한계 가급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 인처 가능합니다. ③ 청약에금 기주간 대체금에 자역 충격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에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인사 가능합니다.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주민등록표 상 현재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 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메구시 군니제네 시 메구시 구민등목표등본, 기독관계등당시 추가 제출)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35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HOLELT 4		2명	15	6명 이상	35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기확인서류
②부양가족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명	20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10.15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기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청약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 1.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2.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 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잔여	네대	잔여세대	주택소유 판단	
丁 世	<u> </u>	ЪT	계약 ②	미분양(가)	미계약(나)	추가계약 ①	구액으뉴 전인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Х	-	② 주택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소유 I (나) 주택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 주택소유 I (가), (나) 주택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 주택소유 I (가) 주택소유 아님	

①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 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청약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IV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3.0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OINFE	1순위	2024.03.05.(화) 09:00~17:30	(IC IL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2024.03.06.(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u>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u>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I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자 일반공급 은행창구 청약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
-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S	리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일반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신고증 또는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및 일반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안내(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서류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당자)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 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대리인 위임불가)		
7513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공통서류 (기관추천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		
특별공급 포함)		0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Ο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3.11.16.)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4.2.23.)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4.2.23.)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4.2.23.)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4.2.23.)로 지정하여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4.02.23.)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주 서명, 관계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세대 이상 세대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특별공급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상세"로 발급)	본인 또는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다자녀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		
특별공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 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0	(13 1)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자녀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이후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0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개월 수(60개월)가 아니라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 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0		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ᄌᇚᆮᇹᅲᅕᆸᄊᄱ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전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일반공급			기득단계증당시(당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와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르딘 ㅇ ㅂ		0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피부양 직계비속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ᇂᇬᄀᆁᅎᄜᆡᄼᄔᄜ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부적격		0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통보 받은자		0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0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0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위임인 인적사항 기재)		
신청시 추가사항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 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 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해당직장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자영업자	법인대표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재무제표	·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세무서
	무직자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견본주택 비치
기타(근로	L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해당직장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서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3, 2015, 2017, 2019, 2022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 = =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건물+토지)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입증하는 경우	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당,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 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 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 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일반공급 인주자 및 예비인주자 선정

유의사항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 31 -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Ι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시 : 2024.03.1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일시 : 2024.03.25.(월) ~ 2024.03.27.(수), 3일간 (10:00~16:00)
OIHLTIT	1순위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장소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일반공급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인증 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3.12(화) ~ 2024.03.21.(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하기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4.03.1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4.03.1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2024.03.16.(토) ~ 2024.03.24.(일) (10:00~16:00) (9일간)
제출처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유의사항	**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I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型수 0 0 0 0 0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서면 조미드로버송/네이의 교향, 조소범도 나한 미 범도 나의 네티그 서나의 미 이지, 네네즈 미 네티즈이의 과게 교향되어 바그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당, 구인등복인회(세대권 포함), 구조인당사당 및 인당사휴, 세대구경사휴 및 철자, 세대구 및 세대구화의 전계 포함하여 철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을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0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0		신분증	HO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등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는 건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0	단신부임 입증서류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경우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을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0	0 0 0 0	O 신분증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O 단신부임 입증서류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O 복무확인서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O 신분증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O 단신부임 입증서류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O 독무확인서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HP자 및 지계존속,

	서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상세"로 발급		
일반 공급 (가점제,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 존속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예비입주 자)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0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청약자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불가 단, 외국인의 경우 국적지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본인 발급용)		
대리인	0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신청 시	0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해확인서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발급)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VΠ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3.25.(월)~2024.03.27.(수), 10:00~16:00(3일간)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ជា1533-1355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0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계약 시	0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0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0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୩ଟ୍ୟ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서식 게시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재공고 후 청약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된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타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1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시행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 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 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 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 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 좌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1,2차)	신한은행	100-036-03886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분양대금 관리계좌(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연속구시구중인인력(구)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신한은행 100-036-03886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01동 301호 홍길동 → "20010301홍길동", 2001동 1304호 홍길동 → "20011304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입주 관련 안내 및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사전검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8년 0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동공동시설[독서실(남·여프라이빗),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경로당, 키즈놀이터, 돌봄센터 등1,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룸, 샤워시설(남·여) 등1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계약금	잔금(입주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3,000,000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의 경우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및 추가 선택품목 정액제 계약을 실행 하오니. 잔금은 추가 선택품목 옵션 선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84A	84B	84C
발코니확장금액	21,500,000	24,100,000	25,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막감자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 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 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 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옵션명		내용	84A	84B	84C
무상선택	침실2,3 가변형 벽체	택1	[확장기본] 침실2 / 침실3 개별 사용	-	-	-
TOUT	선택형	<u>-</u> 41	침실2+침실3 통합	-	-	-
공간특화	침실2,3 가변형 벽체 선택형		대형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2,358,000	2,358,000	2,374,000

	현관 수납 특화			현관	+복도 팬트리 통합	603,000	697,000	-
	실기조미			3SD 형	현관 중문 (자동중문)	2,136,000	2,136,000	-
	현관중문	1SD 현관 중문(자동중문)			-	-	1,949,000	
	욕실 고급화	공용욕실	공용욕실 욕실장 디자인 상향+타일,욕조,도기,수전,악세서리 마감 특화+스마트 욕실 환풍기				6,223,000	6,223,000
마감특화	12 -3-1	부부욕실	샤워부스, 욕실장 디자	인 상향+타일,도기,수	≥전,악세서리 마감 특화+스마트 욕실 환풍기+스마트 샤워기 캔버스 H	6,223,000	0,223,000	0,225,000
	바닥 마감 고급화			거실	실, 주방 바닥 타일	1,442,000	1,415,000	1,786,000
	T.II 7.11	벽/심	상판 세라믹타일+주방가구·	특화(유리플랩장 상/	하부장 조명 외)+장식장+수전특화+독립형 후드+하이브리드쿡탑	11,008,000	10,207,000	-
	주방 고급화	ı	벽/상판 세라믹타일+주방	가구특화(유리플랩장	상/하부장 조명 외)+수전특화+독립형 후드+하이브리드쿡탑	-	-	8,523,000
	벽 마감 고급화		아트월 대형 세라믹 타일 + 복도벽 마감 특화 + 침실1 히든도어			9,133,000	9,122,000	9,801,000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디자인선택	기본		[확장기본	t] 냉장고 공간제공 (후면 벽지 마감)	-	-	-
			1	빌트인 냉장고+냉동	통고+김치냉장고+수납시스템가구	6,041,000	6,041,000	6,041,000
가구특화	드레스룸 고급화	벽판넬형 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고급형 붙박이장			5,460,000	-	5,338,000	
	는데고목 <u>고</u> 면자	벽판넬형 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고급형 붙박이장+다용도수납공간(가구도어+다용도걸이+은경)			-	7,417,000	-	
	침실3 붙박이장			고급형 붙박이장		1,362,000	1,362,000	1,362,000
					거실+주방+침실1 3대 설치	5,586,000	5,586,000	5,586,000
		천장	형 시스템 에어컨	택1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2,3통합+대형드레스룸) 4대 설치	6,845,000	6,845,000	6,845,000
	시스템 에어컨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설치	8,104,000	8,104,000	8,104,000
	시으럼 에이신	거실+주방+침실1 3대 설치	거실+주방+침실1 3대 설치	6,015,000	6,015,000	6,015,000		
		천장((공기	형 시스템 에어컨 기청정키트 포함)	택1	거실+주방+침실1+침실2 (침실2,3통합+대형드레스룸) 4대 설치	7,417,000	7,417,000	7,417,000
가전특화	특화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설치	8,821,000	8,821,000	8,821,000	
		식기세척기			970,000	970,000	970,000	
		기능성 오븐			337,000	337,000	337,000	
	빌트인 스마트 제습기			빌트	인 스마트 제습기	1,390,000	1,390,000	1,390,000
	미니월패드				미니월패드	464,000	464,000	464,000
	조명 고급화	거실	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주	- 방 우물천장/간접조	명 + 특화조명(디밍/색온도 조절, 리뉴얼스위치 기능추가 포함)	5,804,000	5,804,000	5,766,000

■ 추가선택 품목 계약관련 유의사항

1) 시스템 에어컨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홈네트워크 및 Hi-oT와 에어컨 연동은 유상옵션 선택 시에 한하며, 천장형 또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개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연동은 불가합니다.

2) 가전기기 및 조명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후면에 벽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평면 및 조명 업그레이드(유상) 선택에 따라 조명기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 설치로 인해 우물 천장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선택품목 관련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붙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 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하여주기시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대금 납부 계좌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납부계좌(계약금)	신한은행	140-013-983940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납부계좌(잔금)	신한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인식구시구중인인력(구)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최초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선택품목 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 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신한은행 140-013-983940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계좌확인후 반영 요망)를 통해 관리 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01동 301호 홍길동 → "20010301홍길동", 2001동 1304호 홍길동 → "20011304홍길동")

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mʰ)]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4년 1월 19일 승인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견본주택에는 84A타입, 84B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CG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 시기 바랍니다.
- ㆍ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 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옥상구조물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대 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 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생활폐기물 보관소,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 보관대, 포장 패턴 및 소재, 주변 환경 등은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타 지역의 타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ㆍ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ㆍ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ㆍ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 행위)는 사업 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마감 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ㆍ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문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ㆍ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ㆍ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동 표시, 주동 외관(동 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 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ㆍ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용 DA, 주변 현황(단지 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 시설, 단지 주변 레벨 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건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방화문,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 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주변 고층건물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내부 붙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 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공동주택 관리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ㆍ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ㆍ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ㆍ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ㆍ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

(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ㆍ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도시계획, 관련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충별, 항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담장,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차 수판,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진행 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휴게 및 놀이시설 등 외부시설이 설치되는 지상3층 난간높이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ㆍ 관련 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ㆍ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ㆍ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 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ㆍ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ㆍ단지외부를 둘러싼 도로 등(대지소유 : 아파트 입주민, 이용 : 공공에 이용토록 함)에 대하여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보도)이며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울산광역시 교육청 배치기준에 따라 유치원생은 9권역(옥동무거지구) 또는 10권역(신정지구),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옥동·야음중학교군에 배치 가능하며, 고등학생은 남부학교군에 배치 가능합니다.
- · 초등학생의 경우, 신정초 교실 여건 상 배치가 불가하여 통학구역 변경 후 울산중앙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생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 예정 2년전에 재협의 예정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정 유지·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지하 주차대수는 876대(공동주택용 793대, 근린생활시설 8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 지하2층~지하5층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으로 계획됩니다. 차량출입구가 1개소로 주거/비주거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 2.7m 이내로 지하 2층 주차구획까지 진입가능)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방용 오물분쇄기 경우 인증제품 외 설치·사용은 위법사항입니다.
- ㆍ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타입별 초과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지하1층~지상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 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인허가과정에서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아파트 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산지, 운동 시설, 부지 고저차 등 주위 환경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아파트 옥상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 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고 인접한 세대에 소음·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장식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 및 계획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부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외부계단 및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방범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사항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저층 세대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이 접해있어 소음, 냄새, 진동, 방범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에 취약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지상2층에 아파트/근린생활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제연휀룸, 탈취기, 실외기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해당 시설의 급배기를 위한 외부에 접하는 그릴창호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본 공사시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에 탈취기 및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난간 높이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ㆍ본 공사시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 점검, 관리를 위해 아파트동 하부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ㆍ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의 경우 계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 및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 욕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ㆍ세대발코니 내 대피공간(하향식피난구)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ㆍ각 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세대 현관문 열림 방향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합니다.
- ㆍ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 공동장소인 광장,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각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 고층 세대는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ㆍ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AS 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명칭은「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이며,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에 소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요청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청약통장을 사용한 정상 분양계약자 제외)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분양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분양자의 주소에 서면통지하는 방법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분양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ㆍ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 혹은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ㆍ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에 비치된 마감재목록표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은 유상옵션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 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세대 천정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 월패드, 미니월패드(유상), 디지털도어록, 주방거치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ㆍ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 (식탁/침대 등 이동형 가구, 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금 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ㆍ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피난 대피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경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 내 도로 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 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 (건축 옹 벽, 토목 옹벽, 돌 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교통망 및 도로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ㆍ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회차공간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는 101동, 102동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 차량 전조등 및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ㆍ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 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 102동 옥탑 구간에 위성안테나 3개가 설치되며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동 옥상 및 건축물 높이에 따른 측벽에 피뢰 설비가 설치되오니 인지 바랍니다.
- ㆍ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 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ㆍ 동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 헬리포트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미니월패드(유상), 디지털도어락, 주방거치대,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ㆍ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ㆍ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ㆍ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건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카탈로그 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아파트 외벽마감(지상4층~46층)은 외부용 수성페인트마감으로 색상 및 패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벽 디자인, 색상, 마감재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시설물(문주, 램프출입구, 주동출입구, 자전거보관소, D/A, 제연휀룸 등)의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상가 지붕층 옥상정원에 대해 식재 종류, 수량, 위치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린이 놀이터 위치, 놀이기구 사양, 수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ㆍ상가 지붕층 제연휀룸의 마감은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상가 지붕 및 외부 난간은 실시공시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 또는 투시형 난간으로 변경 설치될 수 있고, 해당 난간 높이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높게 설치 될 수 있으며 디자인, 색상,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ㆍ 건물 외벽 디자인(석재마감 등)에 의해 일부세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됩니다.
- ·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 방향,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ㆍ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소음 및 반사광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배기휀 등이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 상가지붕 등에 설치되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저층 세대 입주민께서는 모형 상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조경 식재(소나무 등)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시 단지 조경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상3층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조망권, 환경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민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지상3층에 펫놀이터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조망권, 환경권, 소음 및 진동, 사생활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 단지내·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의 외벽 및 옹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주동의 경우 접근성에 있어 다른 주동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택배차 등 차고가 높은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은 101동과 102동사이 차량출입구를 통해 지하2층 주차장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유효높이는 2.7m이며, 지하3~5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등 차고가 높은 차량 은 출입이 제한됩니다.(단, 차고가 높은 차량 중에서도 주차장 유효높이 제한으로 출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ㆍ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위치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위치는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 ·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 주동 공용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등) 창호 사이즈는 실시공시 주거환경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ㆍ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폐쇄장치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그 외층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 단지 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휴게공간, 외부계단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 단지내 레벨차이에 의한 주민 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필로티, 휴게공간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 노출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출입구 중 공개공지를 통한 단지 출입구 진입부위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바닥을 포장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 · 각 주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주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주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ㆍ지상 및 지하의 각 주동 출입구 전면에 구조계산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주동의 외부에서 지하. 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 각 주동 코아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주출입구의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춬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외부 바닥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에 의한 옹벽 및 법면의 경우 형태 및 구간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주출입구로 부터 각 주동 주출입구까지의 접근의 형평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 각 주동의 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ㆍ 공동주택의 옥탑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옥상 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 습니다.(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VII- 0.224g 입니다.
-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저층부 형 태 및 디자인 및 아파트 주동 옥상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ㆍ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안전성, 이용 편의성 등에 따라 본 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ㆍ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설계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ㆍ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ㆍ단지내 비상도로가 연결이 안될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및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실내용 헬스운동기기와 붙박이형가구(신발장, 락커 등) 설치가 포함(테이블, 의자, 소파 등 이동식 가구와 비품은 제외)되며, 인포메이션데스크 및 붙박이형가구의 형태는 카탈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ㆍ 각종 인증(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ㆍ단지 전체가 외부 도로에 접해있으며, 이는 24시간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본 단지에서의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울산광역시 건축조례」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공동주택의 동측, 남측 및 서측에 공개공지*가 조성됨
- ⋆ '공개공지'라 함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간을 말함
- ㆍ본 단지는 해당 동의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 니다.

- ㆍ 101동/102동/103동 지상2층, 104동 지상3층, 21층에 제연휀룸, 지상2층에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저수조 및 급배기구 등이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101동 부대시설 옥상, 102동 부대시설 옥상, 103동 2층 상가 소방펌프실 및 104동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주방배기 탈취유니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진동, 냄새, 그을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 바랍니다.
- · 본 건물의 복도 및 계단실 일부에 세대 공급용 가스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피난안전구역은 21층에 설치되며, 향후 상세설계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의 그릴위치 및 층고, 주변 단위세대(호실)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옥상에는 아파트용 소화펌프실 및 각 세대 욕실 배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동 21층 피난안전구역과 지상2층 및 지상4층 제연휀룸에 소방용 제연휀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상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이 설치될 경우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ㆍ무인택배함이 지하2층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예정임. 설치 위치 및 크기, 사양, 디자인 등 이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ㆍ지상3층에 경로당, 작은도서관, 키즈놀이터,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데크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ㆍ대지의 지형 레벨차이에 따라 101동~103동의 지상3층은 104동 지상4층에 해당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101동~103동 지상3층, 104동 지상4층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주동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이용해서 접근가능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상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1동, 102동 지상3층 엘리베이터홀과 지상3층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피트니스 등) 사이에는, 화재 등 유사 시 양방향 피난을 위해 사용되는 출입문이 설치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유사시에만 열리는 구조로 평소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본 단지의 차량출입구의 차단기 위치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가 102동 지상1층 북측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현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및 정압기 설치 위치가 101동과 102동 사이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101,102,103동 지상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해 있으며 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ㆍ단지 내 각 지상3.4층 옥상정원 인근에는 주차장 환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 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보일러 연도, 주방 렌지후드 배기구, 공용욕실 배기구 및 부부욕실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단지 내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및 배관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관이 노출됩니다.
- ·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지하층 근생창고에는 급, 배기 설비 외 별도의 제습기가 설치되지 아니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단지내 설치되는 빗물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PIT층의 외부공간(지상3층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시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 PT층 지붕에 탈취기 및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난간 높이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 · 각 동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 일부 실에는 공용 또는 타 실을 위한 설비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본 건물의 복도 천장고는 시공시 일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별 유의사항

- ㆍ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따라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미니월패드(유상), 월패드, 주방거치대, 디지털도어록 등의 제품 제원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 분전반, 팬트리 또는 창고 내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상/하 또는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 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포함)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적용된 마감 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변 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 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1, 발코니2(다용도실), 샤워부스, 욕조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ㆍ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 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 (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가변벽체, 기구 등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마감 두께는 벽지 바름, 걸레받이, 천장 몰딩, 등 미세한 치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y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yein: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ㆍ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 한하여 바닥 배수구 및 선홈통이 설치되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싱크대 내부의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온수분배기 등)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레인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레인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에 설치되는 가스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 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 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 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 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본 공사 세대 가스 배관 시공 시 가구 간섭 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그 견본주택 각 세대에 연출된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단위세대 내부 단 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단위세대 각 부분의 창호 크기 등은 세대 타입별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크기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 평형별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서비스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일부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일부 세대의 창호 및 난간 사이즈는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 가구와 주방가구, 욕실 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 창호, 방화문 및 발코니 핸드레일은 본 공사 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 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내 실외기 및 보일러 등의 가동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실외기실 및 보일러 설치공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실외기실의 도어 및 그릴, 대피공간 도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상부에 설치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 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유상) 실외기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 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단위세대 내 설치된 타일류는 본 공사시 패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 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 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은 동별, 충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임시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 ㆍ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발코니 확장 시에 선 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ㆍ 평면 구조에 따라 일부 평형은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세대 내 세탁기 설치공간에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적층시 건조기에 의해 창문이 가려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ㆍ세대 내 세탁기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창호는 안여닫이 창으로 계획되며,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적층시 건조기에 의해 창문 열림에 일부 간섭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ㆍ건조기 설치 시 채광 및 창호 열림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실 선회 문 등 선택사양에 따라 안방 앞 발코니에 건조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세대 현관문 및 세대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세대 현관문 열림 방향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가구. 가전류 등 유상옵션 품목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또는 "시행위탁자 및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 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월패드, 미니월패드(유상), 주방TV, 세대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의 위치 및 크기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발코니 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슬라이딩 도어류는 실시공시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ㆍ세대 내 우물천정 높이는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정고 및 길이/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 박스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설치되는 붙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평면 타입에 따라 길이 및 타입 (워크인 타입 등)이 변경 제공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ㆍ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ㆍ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 확장형 세대의 경우 일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열재 추가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거실 외부의 발코니 및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배치 및 설치, 타입, 수량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은 안전, 외부 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내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 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다용도실)에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에 에어컨 및 세대 환기유니트(일부세대는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가 설치되며 소음, 진 동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창문이나 실외기루버를 닫아놓아야 합니다.
-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ㆍ 단위세대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 주차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위치 저장 버튼을 작동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원패스 시스템과 주차위치 시스템은 기본 스마트폰 APP으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 · 하이오티(=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하이오티 서비스(현대오토에버)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 및 무선 AP는 입 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이오티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l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ㆍ하이오티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드레인 주 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단위세대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세대 환기설비,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주방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가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 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내 실외기, 환기장치, 우수, 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 천장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ㆍ 각 세대 주방 배기 및 욕실 배기는 당해층 배기로 다른 세대의 냄새가 유입될 수 있고. 배기 성능은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침실이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하향식 피난구실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며, 피난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 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욕실 내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해당 배관은 상부세대용으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화장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탁실에 세탁배수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실외기실에는 가스 배관 입상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세대 내 지상4층~지상18층까지 소방관 진입창호가 설치되며, 소방관 진입창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의 타격지점 표식이 부착되며, 본 공사시 창호크기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방관진입창호는 소방차 정차가능구간에 따라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101~102동 4F~17F, 104동 5F~17F 84B타입 세대 내 거실창은 소방관련 기준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이 계획되고, 거실창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의 타격지점 표식이 부착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유상옵션의 경우 타입별 적용부위 및 형태가 다르니 계약 시 상담데스크를 통한 확인 바랍니다.
- ㆍ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혹은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ㆍ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시공시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및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배기 덕트가 천장속에 설치되어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침실이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4층~10층 세대의 안방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에 법정 소방시설인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 저층부 세대(4~6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 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주방TV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ㆍ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및 EPS/TPS실, 휀룸실, MDF실, PIT 등의 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및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가 설치되는 다용도실은 비 난방구역으로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주차장 기둥에 소화전 설치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욕실 당해층배기 설치로 인해 각 침실 커튼박스 규격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과 침실1(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되며, 기타 침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ㆍ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다르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욕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ㆍ전기 쿡탑(주방고급화) 옵션 선택 시, 마감성을 위해 가스 배관은 미제공될 예정이며, 가스배관 등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비용이 반영되어 옵션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 ㆍ 각 세대 내 대피공간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 됩니다.
- · 세대 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위치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ㆍ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은 지상1층, 지상3층에 용도별로 각각 분리되어 설치되며 이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2층~지하5층에 설치되는 창고는 실시공시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 진출 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 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PIT 지붕의 일부 옥상조경 구간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으며, 관리자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옥상조경의 세부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지상3층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주동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이용해서 접근가능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시설(어린이놀이터, 중앙광장,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위치는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상1층에 어린이집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용도별 천장고는 구조, 설비등의 계획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101동, 102동 지상3층 엘리베이터홀과 지상3층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피트니스 등) 사이에는, 화재 등 유사 시 양방향 피난을 위해 사용되는 출입문이 설치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는 유사시에만 열리는 구조로 평소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해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ㆍ 아파트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 하여 적용됩니다.
-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 도면(임시사용승인 도면 포함)을를 기준으로 합니다.

X

기타사항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호
-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유효높이) : 지하1층 ~ 2층 2.7m, 지하3층 ~ 지하5층 2.3m
-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ㆍ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0.224g	VII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u>o</u>	l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그래나 다 셔게 가지 때 소속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8-1번지 일원 주상복합

2. 신 청 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J. 대 지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96번길 18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다. 호	· 경	관
	-1 - T	10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중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안목	선능능급
1.	내구성	*
2.	기번성	**
3.	수리용이성 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P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학목	성능등급
1.	기존 내지의 생태학적 가시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N
3,	토공시 절토 성토랑(땅깎기 휴쌓기를 한 양) 최소회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다당성	1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린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 - 재생에너지 여용	
8.	지단소 애니지원 기술의 적용	嶺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징물질의 사용 금지	*
10.	완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지탄소 지째의 시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배물질 서감 사제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대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4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흰기성능 확보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사동온도소절장치 설치 수준	**
_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형목	싱능등급
1.	난시대 · 및 보행사 전용도로 소성 및 연결	·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살현장의 활경관리 계획	****
6.	운영 - 뮤지관리 분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메뉴열 제공	***
8.	독색건축인종 관련 정보재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서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중합시스템	*
14.	방법안선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학보	*

마.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성능안목	선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면설비	*
3.	내화성능	*
4,	수렁피난거리	*
5,	북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 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2월 6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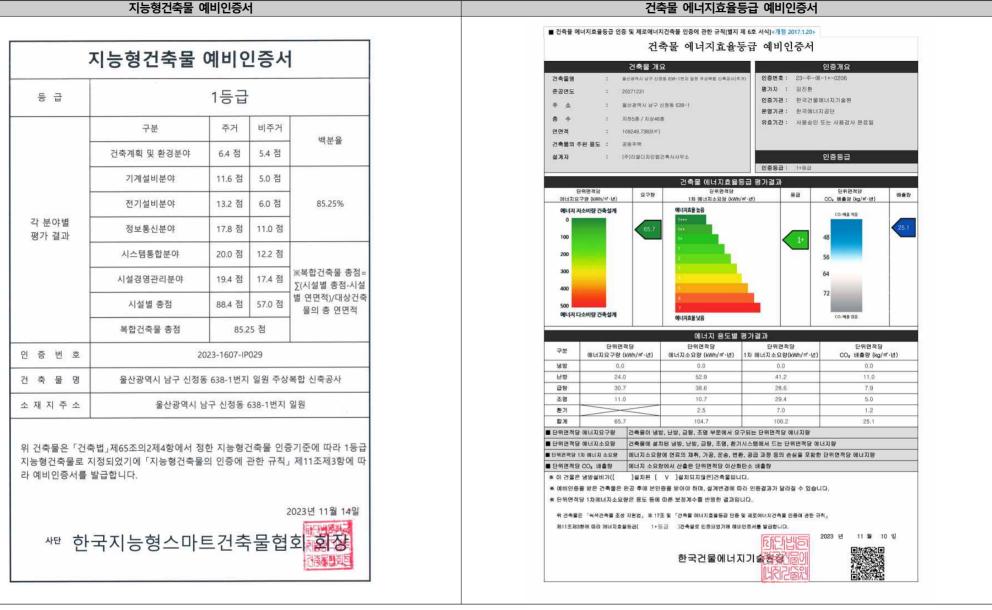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120g/㎡]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 지능형건축물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건축법」제65조의2 및「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거 [붙임5]지능형건축물[1등급] 예비인증(2023-1607-IP029)을 취득하였으나, 본 인증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하여 [붙임4]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예비인증(23-주-예-1+-0206), (23-비-예-1+-0184)을 취득하였으나, 본 인증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4-101-0002200호	327,520,7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화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중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자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통신 감리	소방 감리
상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선경엔지니어링	㈜진일기술단	㈜더베스트이엔씨
금액	2,750,000,000	800,000,000	286,000,000	1,169,664,411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신탁사)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케이알파트너스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1001~1004호 (우동, 인텔리움센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80111-1347384	110111-2153015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케이알파트너스,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아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의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해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케이알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케이알파트너스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 및 공급계약에 관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케이알파트너스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익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서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게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서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신산탁㈜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케이알파트너스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시행위탁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견본주택: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ms-central)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견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377-75) I ☎1533-135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